★ 1 보건복지부

1. 귀하가 신청한 지원금에 대한 조사 결과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비고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관계	지원대상자	생년월일	지원금액	지원개시일
본인	박인서	19**년 12월 10일	200,000 원	2023.04.14 ~

- * 지원금액은 예상금액으로, 주거급여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실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2. 거주지역, 세대구성, 소득·재산 및 임대차 계약조건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을 초과하거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격이 중지, 변경 되거나 지원금이 감소 될 수 있습니다.
 - 중지: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신고 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해당 사실을 보조사업자(시·군·구)가 확인한 경우, 주민등록 이 말소된 경우,지원대상자가 사망·이민 등으로 지원금이 필요없게 되거나 지원대상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거주지·계약조건등이 변경되었으나 변경신청하지 않은경우 등
 - 변경: 전출입 등으로 임대차 계약조건이 변경 있는경우 등
-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경우 해당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기초생활수급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수급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 방지통장** 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지원금이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처리기한 경과사유 등

- 1. 청년월세 지원 신청(변경)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1) 청년월세 지원: 지원결정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보조 사업자(시·군·구)에게, 보조사업자(시·군·구)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보조사업자(시·군·구)를 거쳐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에게 서면으로 신청
 - 2) 다른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의해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3. 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 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4. 지원기간 중 월세계약 내용 변동, 지급정지 사유의 소멸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시·군·구(읍·면·동)에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3 년 04 월 18 일

담당자 : 공동주택과 김혜수

문의 전화번호: 0332504408

강원도 춘천시장

